

漁村契의 機能(事業方式)에 관한 研究

張 謨 鎬

釜山水產大學教授

- I. 序
- II. 一般事業 推進方式
- III. 共同漁場의 協業化 推進方式
- IV. 結 論

I. 序

漁村契는 沿岸部落에 있어서 漁業을 통한 共同利益의 추구하고 漁民의 協同強化 및 그 효과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水協 單位組織의 하부에 설립되는 基盤組織 또는 最末端協力組織이다. 따라서 실제 그 業務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地區水協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經營活動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단순히 地區水協의 下部組織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비교적 독립성을 가지는 單位經營體의 性格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漁村契에서도 ① 지도사업, ② 漁業權의 취득과 漁業의 경영, ③ 地區水協이 향유하는 漁業權의 행사, ④ 漁民의 생활필수품과 漁船 및 漁具의 공동구매, ⑤ 漁村 共同施設의 설치 및 운영, ⑥ 水產物의 간이 공동제조 및 가공, ⑦ 營漁資金의 알선 및 배정, ⑧ 漁民의 후생복지사업, ⑨ 구매, 보관 및 판매사업, ⑩ 신용사업, ⑪ 단체협약의 체결,

⑫ 정부 또는 水協의 위촉사업 및 보조에 의한 사업 등 水協의 事業에 비해 다소 범위가 협소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독립적으로 營爲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漁村契가 그 구성원인 漁村契員(이하 契員이라고 한다)의 職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각종 事業은 經濟事業 뿐만 아니라 社會政策的인 事業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漁村契의 事業은 經濟事業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다른 事業들은 주로 經濟事業의 기초 위에, 또는 그것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經濟事業의 基本推進方式은 과거 一般 協同組合에서 채택하여 온 方式이 적용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漁村契의 설정에 비추어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몇가지 方法을 소개하고 또 漁村契 특유의 共同漁場 協業化에 관한 私案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一般事業 推進方式

漁村契는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의 漁民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약한 입장에 있는 獨立小

生産者로서의 漁業者와 漁業從事者가 그의 생산이나 生活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協同組織을 만들어 자기들 스스로가 이용하는 것으로서 곧 그들 자신이 조직자인 동시에 이용자의 協同體이다.

더우기 漁村契는 다른 營利企業과는 달리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른 협동조합과도 달리 契員의 생활을 돕는 동시에 共同漁場의 합리적 이용개발과 契員 개개인의 零細漁業經營의 協業化에 事業의 目的을 두고 있다는 데에 그 특질이 있다.

또 漁村契는 가능한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사업을 다할 수 있으므로 이들 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추진한다면 이용자인 契員에게 대단히 有益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보면 一般 私企業에서와 같이 상대자에 따라서 差別去來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漁業權을 행사시키고 어떤 사람에게는 漁業權을 행사시키지 않는다든가 해서는 아니되며 가능하다면 非契員에게도 그 利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은 契員全部가 납득하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잘못하면 協同을 저해하는 要因이 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때 漁村契 운영의 묘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共同事業 및 共同養殖業 등의 생산성을 向上시키고 그것과 漁村契의 其他事業 및 地區水協의 각종사업(특히, 信用, 販賣, 購買)과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水協系統組織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漁村契는 그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의 傍系組織, 예를 들면 漁業開發研究部, 부인부, 청년부, 協業研究部 등과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이들의 협력을 얻어 조

직적으로 契의 운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漁村契의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식은 漁村契의 사업내용에 따라서 상이할 것이나, 현 단계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1. 全利用方式의 導入

漁村契는 契員의 利用組織이므로 그의 설립취지에서 볼때 契를 완전히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실제로 있어서는 漁村契의 사업량이 증대하면 할수록 시장에 있어서의 발언권도 강화되고 유리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곧 契員이 契를 완전 이용하는 체제가 된다면 그 힘은 막대할 것이며,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것이 더욱 강화되면 個別 漁業生産과 漁村契의 조직 밖에서 생산물을 판매하거나 소요물자를 구입할 필요까지 없어질 것이다.

漁村契가 약체화되는 이유의 하나는 契員이 항상 목전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장기적인 이익을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데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共同漁場의 경우 共同作業하여 漁獲물을 공동판매하면 좋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으며 보다 많은 이익을 契員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능력만을 過信하거나 순간적인 이익의 감소를 두려워하여 공동화를 방해하는 일이 적지 않다. 또한 購買의 경우에도 漁村契나 地區水協에서의 공급가격이 다소라도 비싸면 곧 漁村契나 地區水協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않고 일반 업자로부터 공급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漁村契나 系統조직으로서도 사업

분량이 증대되지 않고 반대로 소요경비만 증가하므로 漁村契나 地區水協의 공급물은 가격이 높아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漁村契나 水協系統을 이용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漁村契 본래의 설립취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즉 漁村契員은 漁村契를 완전히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目前의 이익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이익의 실현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漁村契의 발전(協同組合운동의 발전도 같음)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漁村契의 운영에 대해서 비판해야 할 것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契員은 자기가 소속된 漁村契의 事業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면서 그의 완전 이용을 도모해 가는 것이 漁村契의 조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진전하게 하는 것이며 漁民들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2. 實費補償의 手數料主義

漁村契에서 행하는 各種事業에 대해서 契는 그의 취급에 소요된 인건비나 자재비, 운반비 등 사업비용에 해당되는 것을 수수료로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수수료의 실비징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漁村契나 기타 協同組織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비능률적인 사업의 운영이나 일을 함으로써 實費가 높아진다면 비록 실비의 수수료라 하더라도 契員들이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따르지도 않을 것이다. 반대로 무계획적인 수수료 인하도 漁村契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따라서 漁村契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약하고 허실이 없는 합리적인 운영을 하면서 적정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비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 즉 適正手數料의 결정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실제의 산정에 있어서는 종래의 사업비용을 참고하는 것도 필요하겠으나 사업연도 초에 면밀히 수립한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사업의 취급량과의 관계에서 산정해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協同組合運營의 경향에서 보면 「마진」과의 관계에서 결정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경우라도 漁村契로서는 一般企業에서의 「마진」보다 낮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의 경영능률의 불량이 지적될 것이므로, 漁村契는 합리적 운영과 적절한 수수료 징수에 노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연도초에 일단 결정된 수수료는 가능하면 연도중에 변경되어서는 아니되고 일단결정된 수수료는 반드시 징수하는 것이 필요하며 예외를 두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의 변경을 하지 않음으로써 一般 商人業者가 잠입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상인이 계획적으로 낮은 수수료로서 漁民의 분열을 도모하고 그 결과 큰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漁民 자신들도 목전에 놓인 價格의 高低에만 눈을 팔지 말고 그 이익을 장기간 상호 비교하여 판단하는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며, 契는 이것을 契員에게 철저히 인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하고 漁村契의 經營者는 정확한 판단력과 임기응변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現金決濟方式의 適用

의상판매는 자금의 회전도를 저하시키므로 결국 금리를 잠식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契員에게는 비싸게 판매하게 되며 외상매출금 반제

를 독촉하는 경비도 발생하게 된다. 한편 현금 판매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契員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며, 漁村契의 경영도 능률화될 수 있을 것이므로 契로서는 현금 결제방식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실제문제로서 상인자본과 경쟁하는 현실에 있어서 契員의 경제상태를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현금 결제방식을 확립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漁村契로서는 地區水協 또는 水協中央會의 系統關係에서 低利의 運營資金을 借入하든가, 共同漁場의 共同生産 혹은 相互金融事業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漁村契가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가든가 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면 현금으로 구입할 능력이 없는 漁村契員에 대해서는 상호금융 대출을 해준다든가 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資力이 부족한 契員을 契에서 축출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어서는 현금결제 방식의 의의가 없어진다.

곧 현금결제 방식의 추진은 漁村契員의 실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契員과 漁村契와의 관계에서 무리없이 추진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契員과 漁村契 간의 현금결제가 원활히 수행된다면 漁村契와 地區水協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이며, 水協系統으로서의 이상적인 현금결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無條件 委託方式의 適用

漁村契의 販賣, 購賣事業에서는 물론 共同漁場, 共同養殖場의 共同經營(自營)에 있어서의 物資購入, 生産物販賣 등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를 선임하고 무조건 위임하여야 할 것이

다. 예를 들면 판매와 구매 등의 사업에는 委託制, 買取制, 仲介制가 있으며 그 중에서 委託制를 실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委託制란 판매의 경우 契員이 생산한 것을 漁村契에 위임하고, 漁村契는 契員을 대행하여 판매하고 취급에 소요된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며, 買取制는 漁村契에서 契員의 생산물을 買取하여 그것을 漁村契가 타인에게 판매하는 방식인데, 이때 漁村契는 그의 差益을 契의 수입으로 한다. 한편 仲介制란 漁村契가 契員과 거래자(혹은 구입품을 판매하는 자)와의 사이에 개입하여 주선만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는 방법이다.

위에서 보듯이 買取制의 경우에는 契員과 漁村契와의 관계가 보통의 商來去와 다름이 없으므로 그 점에서 契員은 「漁村契에 판매한다」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서 委託制는 「漁村契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이다. 즉 買取制는 漁村契의 契員이 완전히 별도의 존재가 되기 쉬운 점이 있는데 대해서 委託制의 경우는 漁村契와 契員과의 관계가 일치 된다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漁民이란 漁村契의 조직자이며 이용자라는 점에서 「漁村契를 통해서 판매한다」고 하는 委託制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구매의 면에서 보면 예약주문에 의하지 않고 예측에 의한 구매를 하게 되면 재고 및 판매품의 잔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漁村契員도 漁村契와 業者를 서로 비교하여 거래하는 상태가 되기 쉽다. 또한 판매면에서도 契員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高價로 매입하여 이익만을 목적으로 판매한다면 代金回收가 곤란할 것이며, 契에서 거래자에 판매수량을 예고해 두었을지라도 契員으로부터의 집하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면 신용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契員들도 漁村契가 자기들의 契라는 것을 망각하고 유리한 경우에만 契를 선택할 것이므로 漁村契와 契員間的 관계는 보통의 商人業者와 전혀 다름이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漁村契의 경영은 물론 水協系統事業도 성립되지 않을 것이며 漁村契組織의 의의도 없어질 것이다.

委託方式에서는 契員이 가격이나 판매대상, 판매기간 등의 조건을 지정하여 委託하는 條件付委託과 그러한 조건이 없는 無條件委託方式이 있다. 條件付委託販賣에서는 漁村契가 그러한 조건에 구속되어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條件付委託方式은 일시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성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으므로 漁村契는 無條件委託方式을 강력히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 無條件委託方式이라 하더라도 契로서는 契員의 요망에 따라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유리한 판매나 구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漁村契가 가격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판매만 하면 된다는가 혹은 구매만 하면 된다는 단일한 생각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구매여 漁村契를 통해서 판매하거나 구매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無條件委託이란 契員이 漁村契를 신뢰함과 동시에 漁村契는 그 신뢰에 따라서 契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으로써 사업의 성과가 최대한으로 발휘될 것이다.

이 방식이 철저히 수행된다면 漁村契는 모든 事業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어 계획생산, 계획판매, 계획구매를 보다 용이하고 유리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곧 無條件委託方式의 유리성이 漁村契員에게 인식될 때 漁村契를 통한

모든 생산재와 생활재의 구입과 생산물의 판매가 기대될 것이며, 자기의 漁村契라는 생각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漁村契의 의식이 全漁村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漁村契의 운영상 가장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Ⅲ. 共同漁場의 協業化 推進方式

1. 協業化의 일반적 방식

共同漁場의 協業化란 곧 共同漁場에 있어서의 漁業의 共同化 혹은 協業化를 의미한다. 그런데 漁業의 共同化 혹은 協業化에는 낡은 전통적, 봉쇄적 漁業제도를 불식하고 낡은 착취적 제도에서 漁民을 구제한다는 근대화화의 의미도 포함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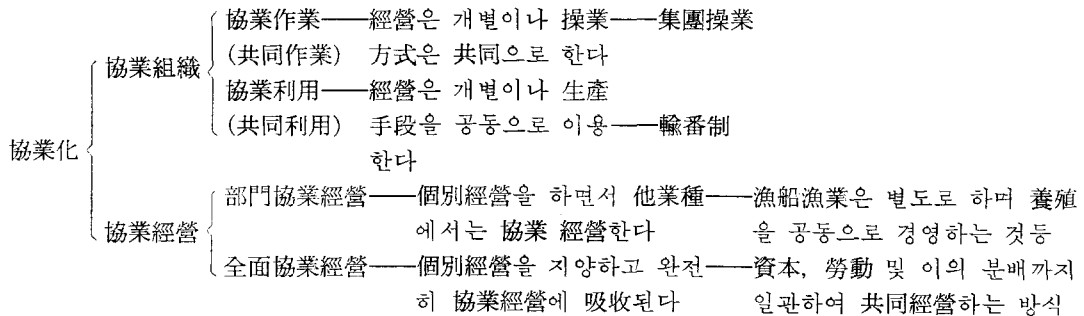
協業을 크게 나누면 協業組織과 協業經營으로 대별된다. 協業組織이란 개별 어업경영을 하면서 어업생산 작업만을 타인과 협동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다시 協業作業組織과 協業利用組織으로 구분할 수 있다. 協業利用組織은 개별경영을 하면서 어업 생산작업에 필요한 새로운 漁具나 漁撈機器 및 處理加工施設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협동이며, 協業作業組織은 각 어민이 개별경영을 하면서 각 漁船의 종업원과 개개의 漁船 등을 결합하여 작업을 분담하여 조업하는 작업분업 형태를 도입한 共同作業組織이다. 協業組織은 協業經營이 아니므로 불안정하고 영속성이 없는 조직상의 결점이 있다. 그러나 작업이나 시설이용만의 협업이라 할지라도 生産規模의 확대와 생산성의 증대효과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沿岸漁業 部門에서는 널리 이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協業作業組織과 協業

利用組織이 더욱 발전하게 되면 공동소유, 공동경영이라는 協業經營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協業經營은 다시 部門 協業經營과 全面 協業經營으로 구분된다. 部門 協業經營이란 어업자가 생산수단을 개별적으로 소유하면서, 어업경영을 공동으로 행하는 사업의 일부공동화 방법이다. 예를 들면 漁船漁家에서 본래의 漁船漁業은 제각기 독자로 영위하면서 휴어기에 새로이 다른 漁船漁業이나 또는 養殖業 등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한편에서는 獨立漁業을 경영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他人과 공동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全面 協業經營이란 어업자가 종래 獨立經營하던 어업을 폐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共同經營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으로서 곧 個別經營을 지양하고 協業經營에 발전적으로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협업화의 추진은 協業組織에서 協業經營으로 발전하여 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협업작업에서 협업이용으로, 그리고 部門 協業經營에서 全面 協業經營으로 추진되는 것이 정상적인 발전단계라고 하겠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처음부터 協業經營으로 유도하는 것이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술한 협업화의 일반적인 方式을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共同漁場의 협업화란 곧 共同漁場에 있어서의 어업의 협업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共同漁場에 있어서의 어업은 漁業權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과 허가나 신고에 의하여 발생하는 어업도 있으나, 그 기반은 漁業權漁業에 있다. 법률상 漁業權을 향유하는 漁村契의 입장으로서서는 그것을 직접행사(自營)하거나 漁村契에 행사시킬 수 있으므로 共同漁場에 있어서의 협업화는 漁村契 자영의 입장과 계원인 행사자의 입장에서 고찰할 수 있다.

漁村契 자영의 입장에서 보면 共同漁場에 있어서의 제어업이 계원을 構成員으로 하는 共同經營, 곧 協業經營이며, 어촌계 자체는 協業經營體가 되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全面 協業經營으로 하느냐, 部門 協業經營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계원인 행사자의 입장에서는 共同漁場에 있어서 漁業權行使, 곧 漁業權自體의 권리는 경영상 비용지출의 문제밖에 되지 않으며, 個別 漁業經營으로서 규정되는 것이므로 이 입장에서의 협업화는 同僚 契員 혹은 제삼자와 어떠한 방식으로 협업화 하느냐가 문제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양자에 적용하는 협업화의 방식은 협업화의 일반적 방식 중 어느 것이나 適用可能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2. 共同漁場의 協業化

여기서는 漁村契와 契員 양자를 포괄한 일반적인 협업화 방식을 共同漁場 종류별로 고찰하기로 한다.

가. 第1種 共同漁場의 協業化

第1種 共同漁場은 資源管理가 기초가 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協業化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① 漁村契의 自營方式

② 契員 小集團에의 分割 自營方式

③ 契員의 共同計算方式 : 전체계원의 共同計算方式, 분할집단의 共同計算方式

④ 個別(自由)計算方式

①, ②의 方式에서는 계원은 出資, 勞力을 제공하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런데 ②의 계원 소집단에서의 分割 自營方式은 漁場區域이 광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그러나 그 분할을 세분화하는 것은 계원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기업화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며, 또한 部落別로 분할하는 것은 전통적인 bonding 성을 지속시키는 것이 되므로 지양되어야 한다. 계원의 共同 計算方式 ③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單獨經營과 共同經營의 折衷方式이다. 이 方式은 生産手段과 그에 대한 비용은 각 계원 부담으로 하고 勞動機會 및 收益分配 혹은 出資 등은 平等 원칙으로 하며 生産물은 공동판매하는 것이다.

個別方式 ④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資源管理를 공동화하고 각 개인의 生産물은 자기소유, 자기계산으로 하는 것이다. 이 方式에서는 生産手段의 共有(혹은 平等자담), 出資 및 勞動의 기회에 대해서는 平等원칙을 적용한다. 그런데 ④의 方式은 사실상 漁村契員의 協동력을 기초

로 하는 것이 되지 못하며 또한 계원의 被傭性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協業方式으로서는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第一種 共同漁場을 완전히 기르는 漁場, 곧 養殖場化하기 위해서는 ①, ②, ③의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나. 第二種 및 第三種 共同漁業의 協業化

第二種 및 第三種 共同漁業權에 의한 어업은 漁船漁業이다. 따라서 이들 어업의 共同漁場에 있어서의 協業化는 곧 漁船漁業의 협업화이다. 漁船漁業의 협업화에는 協業組織과 協業經營을 다같이 적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方式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集團協業方式 : 業種別 協業組織, 協業組織

② 漁船의 大型化方式 : 部門 協業 } 經營方式
協業經營

③ 漁法轉換方式 : 全面 協業經營方式

1) 集團協業方式

漁村契內의 漁業을 종류별로 집단화하여 개개 어업자(漁家)가 漁撈 生産作業을 공동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장의 選定, 漁場의 移動, 操業方法, 漁具의 조정, 出漁, 漁獲物運搬 등을 協同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方式에서는 同種漁船이 많을 때에는 小作業 集團으로 분할하여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곧 어떤 漁村契內에 120隻 정도의 一本釣漁船이 있다면 상호합의하여 수개 小操業 集團으로 편성하여 同一漁場 또는 사전에 배정된 장소에 魚群 探知機를 설치한 指導船을 중심으로 同時出漁하여 操業하되, 각 集團漁船 間에는 漁場의 위치, 漁具의 조정, 漁獲狀態, 각 집단의 狀況 등을 「트란스바」로 相互連絡한다. 그리고 어떤 操業集團에 있어서 어황이 불량한 경우에는 그 指導船은 他操業集團 등과 비교하여 어황이 좋은 어장으로 同僚船을 유도하여 가며

漁場探査도 한다. 이와 같은 집단조업에서는 개개 어선에서 魚探機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정보 연락으로 어선의 기동성이 확대되고 능력이 개발되어 操業半徑은 확대되어 갈 것이다. 따라서 이 방법에서는 생산성을 증대하고 어선간의 生産(收益)隔差를 해소시키고 어장을 효과적,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선의 大型化 方式

이것은 개개의 작은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업자가 협업에 의해서 大型船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개개의 영세어가에서는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금 등을 協業의 힘으로 調達하려고 하는 것이 協業의 주목적이다. 그러나 협업에 의해서 構成된 새로운 經營體는 그와 동일한 규모를 가지는 기존 個人經營과 경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協業經營에 의한 어선이 기존 個人經營體의 어선과 규모에서 또는 기술의 수준에서 동일하다면 協業船의 경우는 명령이나 의사통일의 면에서 個人 漁業船보다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協業船에서는 단순히 대형선을 갖는데 그쳐서는 의미가 없으며, 새로운 기술과 操業方法 또는 어선이나 경영에 있어서 기존 개인경영보다 우월하지 않으면 사실상 성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漁法轉換方式

이것은 개개의 漁家나 漁村契에서 하고 있는 어업 이외의 어업을 하고자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앞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대규모의 收益性(生産性)이 높은 다른 어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는 데는 개개의 漁家에서 소유하고 있던 기존 漁船을 먼저 協業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종래 개개의 漁家에서 1톤 정도의 漁船으로서 一本釣 漁業을 영위하

고 있던 어가에서 그러한 漁船을 공동 제공하여 새로운 승어 四艘張網 漁業을 協業經營으로 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그런데 협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一本釣 漁船을 그대로 승어 四艘張網 漁業에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신규로 漁具만 조달하면 된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서 큰 규모의 操業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 漁期 이외에는 해산하여 종래의 一本釣 漁業을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協業에 참가한 漁家로서는 일년을 계속하여 漁船을 활용할 수 있고 승어 등 특정 漁業이 부진한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어업으로서 이를 克服할 수 있는 저력이 생기게 된다.

한편 이 協業經營에서는 漁船의 代置를 계기로 하여 代置船은 공동소유로 하여 完全 協業經營體로 전환할 수도 있게 된다.

다. 共同 養殖漁場의 協業化

共同 養殖漁場의 協業化 方式은 다음과 같다.

- | | |
|------------------|----------|
| ① 漁村契 自營方式 | } 經營體에 의 |
| ② 契員 小集團의 分割自營方式 | |
| ③ 定着物養殖業의 協業方式 | } 養殖對象에 |
| ④ 魚類 養殖業의 協業方式 | |
- 위의 ①, ②는 이미 第一種 共同漁場의 협업방식에서 고찰한 바 있어 여기서는 약하기로 한다. 그리고 ③, ④는 養殖 對象物의 區分에 의한 協業方式인데 養殖의 특성으로 보아서는 ③, ④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1) 定着性 水產物 養殖業의 協業方式

定着性 水產物이란 곧 김, 미역, 다시마, 들등을 말하는데 이 養殖業은 그 기술의 성격으로 보아 관리가 위주로 되어 있으며, 손을 가하면 가할수록 큰 성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단순한 手勞動 體系의 협업으로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勞動力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시설의 협업화(協業作業)가 필요한 경우에는 協業作業組織과 協業利用組織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김발을 설치한다든가, 種苗를 附着 또는 垂下시킨다든가, 不純物을 제거(掃除)한다든가, 채취를 한다든가 하는 것과 같이 作業에 많은 勞動力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養殖漁家の 勞動力을 협업화에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김 養殖業에서의 김의 切斷機, 미역 養殖業에서의 鹽藏加工施設, 乾燥施設 등과 같은 특정시설을 개개의 어가에서 단독으로 구입하여 설치하기에는 자금이 많이 들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설을 단독 소유한다 해도 거의 완전 이용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施設은 多數人이 共同 利用하는 利用組織이 필요한데, 이러한 利用組織의 施設을 중심으로 共同 作業場을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 共同 利用함으로써 노동시간의 절약과 單位 生産性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2) 移動性 魚類 養殖業의 協業方式

魚類 養殖經營에서는 대규모經營과 소규모經營에 따라 協業化의 方式을 달리할 것이다. 곧 대규모 養殖經營은 대자본과 고도의 養殖技術을 필요로 하고, 협업에 있어서 指揮, 命命은 확실, 신속하게 엄수되어야 하며, 또한 많은 사람이 참가한다 하더라도 漁家は 단순히 勞動力만을 제공하는데 불과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영세어민의 協業으로는 부적당하다.

그러나 소규모 養殖經營은 소형 가두리 등 소규모의 養殖技術이 개발되어 일반화 되어가고 있으므로, 協業經營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곧 魚類 養殖業의 적지가 있고 技術指導가 가능하다면, 漁村契에서 자영할 수도 있고, 漁村契에서 養殖業의 種類에 따라 인원과 사용어장의 넓이를 결정하여 金融支援을 한다든가 하면, 효과적으로

協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魚類 養殖業은 최소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2회 정도 投餌를 하여야 하므로 매일 이를 위한 일정시간이 필요하나, 장시간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漁家の 單獨經營에서는 매일 그 일정시간에 投餌하기 위해서는 지장이 있기도 하나 수개의 漁家에서 협업으로經營하는 경우에는 投餌를 몇 일만에 한번씩 교대로 할 수 있고 投餌當番者도 投餌時間 이외에는 自家의 漁船이나 漁網의 수리, 기타 가사에도 종사할 수 있는 利點이 있다. 따라서 이 協業 經營方式은 漁家の 兼業 養殖業으로서도 적합할 뿐 아니라 部門 協業 養殖經營에도 적합하며 금후 魚類 養殖業의 技術開發과 더불어 漁船漁家の 兼業 養殖經營에 특히 장려할 수 있는 協業 經營方式이라 할 수 있다.

IV. 結 論

원래 漁村契는 地區 水協運動의 內部遂行體로서 조직되었으나 수차에 걸친 統合整備, 法人化의 추진 및 그에 따른 出資認定 등 漁業(漁村) 近代化의 政策에 대응하여 현재는 共同 漁業權이나 漁村共同施設의 管理主體일 뿐 아니라 經濟事業 主體로서의 機能도 수행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금후 經濟成長에 따른 沿岸漁場의 縮少 및 荒廢, 獨募占體制의 강화는 漁民協同化의 확대, 大規模化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漁村契의 資本化 요청은 地區 水協의 下部 基盤組織으로서의 본래의 事業確保의 요청과 심각한 충돌을 가져 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漁村契가 이러한 變革에 적응하여 自體 獨立的인 經濟事業體로서 유지, 존속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諸要件은 충

족되어야 할 것이다.

① 當該地域의 漁業自體가 技術的, 經濟的으로 健全하고, 健全한 協同力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契員의 理解와 積極적인 支持가 필요하다.

③ 經濟的인 觀點에서 적절한 立地를 확보하여야 한다. 즉 市場關係가 합리적이고 좋은 條件에 있어야 하며 交通도 편리하여야 한다.

④ 事業規模의 最低限度를 알아야 한다. 물론 이 한도는 事業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인 損益分岐點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⑤ 漁村契의 經營에는 적어도 個人經營과 같

은 扎实的 管理訓練이 필요하다. 특히 任員 및 職員의 訓練이 중요하다.

⑥ 單一 事業을 하여도 좋으나 地域性으로 보아 漁民의 광범한 수요에 대응한 綜合事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⑦ 地區 水協 등 대의적인 系統組織과 연대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 購販, 信用, 指導事業 등이 특히 그러하다.

⑧ 대내적으로 協力組織 즉 婦人會, 青年學生會, 漁具 漁法改良研究會, 共同 漁場開發 또는 協業 研究會 등과 같은 支援組織을 적극적으로 설립, 활용하여야 한다.